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창업 규정

(제정) 2016-05-13 규정 제409호

(개정) 2016-10-20 규정 제421호

(개정) 2017-02-21 규정 제4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의 기반 구축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고, 그 신청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교원’이라 함은 창업하려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창업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원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심의 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 투입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교원창업 절차

제6조(자격조건) 교원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강원도립대학교에 2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7조(신청) 창업을 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을 신청한다.

1. 교원창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교원 창업검·휴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소속학과 겸직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6.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제조업의 경우)(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참고 서류(벤처기업확인서 등)

제8조(창업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창업 대상 기술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 또는 연구활동 등 대학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는 여부
4. 기타 교원창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교원창업 승인여부를 창업 신청 교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창업 협약(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체결한다.<개정 2016.10.20.>

1. 교원창업 관련 기술 제공
2. 교원창업 활동에 필요한 대학 투입분 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보상 방법
4.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0조(창업검·휴직) ① 창업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한다.

② 창업교원의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창업교원의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총 1년으로 하며, 창업휴직 인원은 학과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④ 창업겸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창업겸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제11조(기업설립 등) 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등기(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업무를 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이어야 한다. 창업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④ 교원창업을 교내에서 한 경우에는 창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교외로 창업기업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제12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한 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대가 등을 대학이 요구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동사항 보고)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기업 평가) ①위원회는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업활동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창업승인 취소) ①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원창업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창업기업 평가 결과 교원창업 활동이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창업교원의 소속 부서장은 창업교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 교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승인이 취소된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공동 교원창업)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할 시, 창업기업은 1개의 교원창업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18조(발명자 실시권)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발명자가 동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약은 별도 체결한다.

제19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도립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1.)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교원 창업 신청서

인적 사항	소 속		학부(과)	
	직위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주 소			
창업 계획	회 사 명		창업예정일	
	소 재 지			
	생산제품		업종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예정직위	

위와 같이 창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교원창업 겸·휴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필요시)
 4.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필요시)

20 . . .

신청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창업목적 및 (창업)회사개요

창업 목적 및 기대 효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예 정) 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2. 사업화 개요

- 기술개발 또는 특허내용 - 시장현황 및 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3. 대학투입분 요청 내역(필요시)

- 시설사용 - 연구기자재 및 비품 - 참여인력(연구원, 학생 등)

4.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필요시)

- 담당과목 강의대체 계획
- 수행중인 연구과제 계획

(서식 3) <개정 2017.2.21.>

교원창업

☐ 겸직
☐ 휴직

신청서

인적 사항	소속		학부(과)	
	직위 (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 월
	주소		연락처	
창업 기업 개요	기업체명		참여(예정)직위	
	기업체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휴·겸직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내용	업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상기 교육공무원의 교원창업 휴·겸직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겸직동의서 1부.

20 . . .

신청인 : (인)

학과장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 <개정 2017.2.21.>

소속학과 겸직동의서

1. 겸직자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공분야 :

2. 겸직내용

- 겸직기관 :
- 직위(직급) :
- 겸직분야 :
- 겸직기간 : 겸직허가일로부터 년 간

아래 본인은 상기 교원이 ○○○○에서 위와 같이 (겸직·휴직)함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 ○○○과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공유재산 (사용)기간 :

☐ 공유재산 (사용)목적 :

☐ 공유재산 (사용)료 : 귀 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유재산 (사용)조건 : 귀 대학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실험실공장 ☐설 치 ☐변 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실험실 개 요	실 험 실 명				소 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면적(㎡)		
	제 조 시 설 명 세						
사 업 계 획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 예정일	
			(산업분류:)				
변 경 내 용	구 분	생산시설면 적(㎡)	제 조 시 설 명 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변 경 전						
	변 경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 설치 ☐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없 음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 승인조건: 년 월 일 - 719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서식 7)

교원창업협약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학과 000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창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을’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관련 활동을 하여야 하며, 교원창업규정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창업 관련 기술 제공) ‘갑’은 ‘을’의 교원창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술이전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체결한다.

제3조(시설물 등의 이용) ① ‘을’은 학내에서 교원창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사용에 대하여 대학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 외에 설비, 비품 등의 사용대가를 대학이 요구하거나 별도의 이용규정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허가 시설물 등의 이용기간 동안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④ ‘을’은 허가 시설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2조 및 제3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5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을’은 창업 겸·휴직 승인기간 중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경상이익 금액의 10%를 매년 ‘갑’에게 기부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창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창업규정에 의거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상기 협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한 사유발생 시 ‘갑’과 ‘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성 명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대학교 ○○학과 ○○○ (인)

(서식 8)

기 부 약 정 서

창 업 기 업 개 요	기 업 체 명		참여(예정)직위	
	기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 업 형 태			
	겸 직 기 간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재정적 기여 방식		☐ 대학 발전기금 ☐ 산학 발전기금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겸직 기간 중 경상이익 발생시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제19조 및 교원창업협약서 제5조에 의거 연간 경상이익 금액의 10%이상을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